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결과

가. 제안일자 : 1995. 5. 11.

나. 제 안 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5. 5. 12.

라. 상정일자 : 1995. 5. 22.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부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동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위원회의 구성)위원회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은 부천시회의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민자유치 사업에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2조)

○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수립,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사항,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장을 시장, 부위원장 을 의회부의장으로 하면 안 되는가?	○ 그렇게 하면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요건(자문 기관)상실로 위원회 설치의미가 없어집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견(수정안 별지참조)

6. 소수의견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8. 체계적 심사내용

○ 없 음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관련
번호	381

제출년월일 : 1995년 5월 22일

제 출 자 : 충 무 위 원 장

1. 수정이유

○ 집행부의 독단과 시행착오 방지를 위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원이 위원회 참여 인원을 증원하였으며, 의원참여 정수를 조례안에 규정

2. 주요골자

○ 조례안 제2조 제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 “위원은 부천시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를 “위원은 부천시의회의원(각 상임위원회별 1인)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로 한대로 수정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수	정	안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 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부천시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③ 위원은 부천시의회의원(각상임위원회 별 1인)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항 “위원장은 부시장 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부시장 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 다”로 하고 동조 제3항 “위원은 부천시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을 “위원은 부천시의회의원(각상임위원회별 1인)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로 한 다.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381
의 건 년 월 일	95. 5. 30 (제 38 회)

제출년월일 : 1995. 5. 11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1. 제안이유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부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동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은 부천 시의회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민자유치사업에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 명한다. (제2조)

나.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수립,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다. (제4조)

[수정안포함]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부천시의회의원 (각 상임위원회별 1인)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부천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3 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 4 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5 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사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 7 조(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 담당계장이 된다.

제 8 조(의견청취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1 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5. 5. 11.

나. 제 안 차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5. 5. 12.

라. 상정일자 : 1995. 5. 22.

2. 제안설명요지

○ 우리시 위촉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95. 5.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고문변호사 정수의 2분의 1을 시의회에서 추천받아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인의 고문변호사를 추천 요구하는 것임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없 음	없 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